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과세체계 개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귀 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4월은 12월결산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4년 사업연도부터는 큰 폭으로 바뀐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
여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이 지방소득세에는 적용
되지 않으며, 모든 법인(결손법인, 비영리법인 포함)에 대해 신고서 제출의무
를 부여함에 따라 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편된 상세
내역 첨부 참고)

개편된 과세체계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우편·팩스 신고하거나 이택스·위택스 등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마감일인 2015.4.30일에는 금융기관 업무 집중과 인터넷 접속과다로 전자
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성 동 구 청 장

세무2과 지방소득세 1팀

☎ [02] 2286 - 5345~7

‘14년 이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이렇게 개편되었습니다.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종전	개편 후
당기순손익		
+ 익금		
- 손금		〈국세 준용〉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율 → 1% ~ 2.2%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		공제·감면 → 현재 공제·감면 규정 없음
+ 가산세		가산세
총부담세액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		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 지방소득세

종전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 (1~2.2%),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규정이 없어 종전 자동 적용되었던 **세액공제·감면은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감면혜택을 지속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개편 후
확정신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종전과 동일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시	납부(신고)기한 + 1개월	법인세와 동시 신고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전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연장된 신고기한 + 1개월	내국법인 연장 (X) 외국법인 연장 (O)

② 신고 특례가 변경되었습니다.

-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만 납부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결손법인 ·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만인 경우라도 ‘14년 이후 사업연도 소득부터는 발생시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③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④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택스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파일 일괄신고 등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의 경우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대리 신고가 가능하나, 위택스를 통해 대리 신고할 경우는 접수 및 승인 절차를 요하므로 미리 대행인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ax(https://etax.seoul.go.kr)	We-Tax(www.wetax.go.kr)
○ 지방소득세 대리 신고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타인납부 선택	○ 지방소득세 대리 신고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대행인 신청 ○ 대행인 : 세무사법에 의거 세무대리에 해당하는 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세무법인)

ETAX를 통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ETAX 접속(<http://etax.seoul.go.kr>)

- 신고납부→지방소득세→법인세분 순으로 선택하여→납세의무자 정보 →신고내역→산출세액 등 입력, 하단에 신고하기 클릭→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용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ETAX website navigation menu. The '신고납부' (Tax Declaration)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Below it, the '법인세분' (Corporate Tax) option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form for tax declaration with various fields like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업태', '종목', '주요업종코드', '사업연도', and '법인유형별구분'.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전 은행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은행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신용카드 납부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카드사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납부가능 카드 : 신한(구LG),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 하나, SK,국민, 씨티, 제주, 광주, 전북, 수협